

시보는 공문시행에 대체하는 효력을 갖습니다.

시보

www.namwon.go.kr

제30호

2017. 7. 28(금)

공고

선

람

기관의 장

○남원시 공고 제2017-1070호 남원시 광한루원 입장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공고 -------- 1

회 람

발행 : 남원시 / 편집 : 홍보전산과 ☎(063)620-6032

남원시 공고 제2017-1070호

남원시 광한루원 입장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

남원시 광한루원 입장료 징수 조례」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및「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7년 7월 28일 남 원 시 장

1.개정이유

광한루원 입장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시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전통 명승지로서의 명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관리하고자 함.

2.주요내용

- 가. 광한루원 입장요금 인상 (안 별표 1)
- 나. 입장료의 감면 조항 추가 신설 (안 제8조제3항)
 - 타 지역 관광지와 연계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을 따로 정할 수 있다.

3.의견제출

- 가.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원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나. 의견 제출사항
 - (1)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)
 - (2) 의견 제출자의 성명(법인 ?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- 다. 의견 제출할 곳 : 남원시장(참조 : 시설사업소장) 우편번호 : 590-080 /주소 : 남원시 요천로 1447번지
- 라. 의견 제출 방법 : 서면, 팩스(620-6834), 직접 방문, 컴퓨터 통신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

4. 기 타

자세한 사항은 시설사업소 지원담당(☎063-620-8904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의 견 제 출 서												
1.	l. 의견제출 목록			남원시	광한	루원	입장료	징수	조례	일부	개정	조례(안)
2.	제출자	성명(명칭)										
		주	소									
3.	의 견											
4.	기 타	-										

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(의견제출 및 처리)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.

2017년 월 일

의견서 제출인 주 소:

성 명: (서명 또는 인)

전 화:

남원시장 귀하

비고

- 1.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.
- 2. 증거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.
- 3.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남원시 광한루원 입장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

제출년월일: 2017. 7.

제 출 자:남원시장

제안설명자: 시설사업소장

1. 개정이유

광한루원 입장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시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 하고 전통 명승지로서의 명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관리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광한루원 입장요금 인상 (안 별표 1)

구 분	어	어른		• 군인	어린이		
। <u>च</u>	현행	개정	현행	개정	현행	개정	
개 인	2,500	3,000	1,500	2,000	1,000	1,500	
단 체	2,000	2,500	1,000	1,500	500	1,000	
할인(연계)	1,300	1,800	500	1,000	200	700	

나. 입장료의 감면 조항 추가 신설 (안 제8조제3항)

- 타 지역 관광지와 연계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을 따 로 정할 수 있다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문화재보호법」

나. 그 밖의 사항

1) 입법예고

- 기 간 : 2017. 7. 28. ~ 2017. 8. 17.(20일간)

- 결 과:

2) 비용추계서 : 해당 없음

3) 성별영향분석평가 : 평가 완료

남원시 조례 제 호

남원시 광한루원 입장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남원시 광한루원 입장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시장은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타 지역 관광지와 연계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을 따로 정할 수 있다.

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

광한루원 입장요금표(제3조 관련)

구 분	어 른	청소년・군인	어린이	
개 인	3,000	2,000	1,500	
단 체	2,500	1,500	1,000	
할인(연계)	1,800	1,000	700	

[※] 연계 할인권은 춘향테마파크 당일 입장권 소지자에 한정하여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8조(입장료의 감면) ①・② (생	제8조(입장료의 감면) ①・② (현
략)	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③ 시장은 관광활성화를 위하여
	타 지역 관광지와 연계 협약을
	체결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을 따
	로 정할 수 있다.

남원시 광한루원 입장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

○ 비용추계 대상 여부

- 조례 제정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미미하여 「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여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.
- ※「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4항제1호
- 제3조(작성대상)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.
 -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,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.
- ③ 「지방자치법」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 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.
-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. 단, 제외

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
- 1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**5천만원 미만**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이 경우
 - 2.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 - 3.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